

別市 內務局長을 當然職으로 하고 서울特別市 議會 議員 2人 以上 및 斯界 著名人事 中에서 市長이 위촉한다」그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諒解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專門委員께서 提案하신 事項인데 受賞候補者에 대한 客觀적인 審査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第9條에다 受賞候補者에 대한 事實調査 그래 가지고 「추천된 候補者에 대하여는 監查官室에서 事實與否를 調査하여 功績審査委員會에 提出을 하여야 한다」그것 한 項을 더 넣고 第9條第2項은 第10項으로 순열을 해서 대신하고 第10條第2項에다가 「委員會의 審査는 推薦書와 事實調査 및 功績調査에 의하여 審査한다」 그렇게 넣으면 좀 完璧한 것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第2條에 1年 以上을 3年으로 하는 것도 거기다 넣어 가지고 그렇게 修正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鞠應好 이렇게 합니다. 오늘 條例案이 議案 第1項 案件, 第2項 案件, 第3項 案件인데 지금 第1項 案件을 가지고 이때껏 이야기를 했는데 第2項이나 第3項 委員님들 異議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議案 第2項과 3項은 완전히 通過가 되는 것으로 하고 1項은 27日 本會議가 오후 3時에 열리니까 여러 委員님들 죄송하지만 2時까지 한번 더 나와서 內務委員會 第5次 常任委員會를 27日 오후 2時에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열겠습니다. 執行部에서는 아까 委員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잘 하는 趣旨는 다 贊成을 하고 이것을 잘 해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미비한 點이 있으면 서로 망신이니까 이 未備한 點을 補完해 가지고 27日 完璧하게 이 案을 만들어서 本會議에 移送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條例審議特委에 移送하는 案까지 다 만들어서 그래서 27日 한꺼번에 다 處理를 해 드릴테니까 準備를, 지금 委員님들 말씀은 速記錄을 參酌하고, 또 우리 專門委員의 意見을 尊重해서 그렇게 해서 완벽한

議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李元宅 感謝합니다.

○委員長 鞠應好 그러면 議案 第2項과 第3項 案件 서울特別市地名委員會條例改正條例案 그 다음에 서울特別市公印條例案이 通過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特別市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 地名委員會 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 第3項 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文化觀光局 文化課長

附 則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서울特別市公印條例案

第1條(目的) 이 條例는 事務管理規程 第41條에 의하여 서울特別市 및 그 所屬 行政機關(以下“行政機關”이라한다)에서 使用하는 公印의 規格 備置, 管守 기타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公印의種類) ①公印은 行政機關의 名義로 發送 또는 交付하는 文書에 使用하는 淸인과 行政機關의 長 또는 補助機關의 名義로 發送 또는 交付하는 文書에 使用하는 職印으로 區分한다.

②各及 行政機關의 公印을 다음과 같이 區分한다.

1. 議決機關. 諮問機關 기타 합의제기관은 淸인을 가지되, 諮問機關은 必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第1號外의 機關은 그 機關長의 職印을 가진다.
3. 地方自治法 第9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機關이 委任받은 事務를 行政機